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- 126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3일
금융위원회

- 다 음 -

1. 상 호 : 비오에스증권(주)

2. 폐지대상 금융투자업

가. 2-1-1 투자중개업 증권

3. 폐지 및 해산 승인일 : 2016. 4. 27.

4. 이행사항 보고

-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